

## 「씨크릿 적금」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씨크릿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 1인 2계좌 만 가입 가능하다.

###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한다.

### 제4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일단위로 한다.

### 제5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한다.

### 제6조 적립방법

- ①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계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 이상으로 한다.
-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 제7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한다.
-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때는 은행에서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시점의 3년제 상호부금 기본금리로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④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3%)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 뷰티샵(헤어, 피부미용 등), 의류쇼핑, 피트니스센터, 문화센터 등 영수증 지참 또는 자기관리(체중, 금연, 성적 향상 등) 관련 약속 시 (연 0.1%)
  2. 2명 이상 함께 방문하여 가입 시 (연 0.1%)
  3. 하나카드 월 10만원이상 KEB하나은행계좌로 결제하거나 월 10만원이상 적금 자동이체 또는

- 이 예금 신규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 가입 시 (연 0.1%)  
4.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연 0.1%)

#### 제8조 분할해지

분할해지는 KEB하나은행 및 제휴 하나카드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도해지금리로 적용하여 가능하며,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허용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